###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 1994年 5月 日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 '93. 12. 27 法律 第4613號로 地方公務員法(第6條 第2項)이 改正되면 서 地方自治團體長의 地方公務員 任用權限의 委任範圍가 "補助機關 의 長, 所屬機關의 長"에서 地方議會의 事務處長等에게도 委任할 수 있도록 改正됨에 따라. 議會事務處長에게 所屬公務員 任用權의 一部 를 權限委任하고,
- ο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既 委任된 任用權과 關聯한 一部權限을 追加 委任하여 效率的인 人事管理를 기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議會事務處長에게 權限委任하는 事項
  - ・ 5級以下 一般職 公務員의 議會事務處內 轉補權
  - ・ 6級相當以下 別定職 公務員의 新規任用・轉補・懲戒・免職等의 任 用權 全般
  - ・ 技能職公務員(6等級 以下)의 新規・轉補・昇進任用, 懲戒, 免職等 의 任用權 全般
  - ・ 専門職 公務員의 採用契約 및 採用期間 延長
  - · 人事委員會의 設置・運營
-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權限 委任하는 事項
  - 人事委員會의 設置・運營

### 3. 參考事項

- ο 關係法令 拔萃
  - · 地方公務員法 第6條 및 第7條

### 4. 其他 參考資料

### 가. 關係法令 拔萃

### 地方公務員法

- 第6條(任用權者)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特別市, 直轄市·道의 敎育監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屬 公務員의 任 命·休暇·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以下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 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을 가지는 者는 그 權限의 一部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補助機關, 그 所屬機關의 長, 地方議會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教育委員會 議事局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7條(人事委員會의 設置) ① 地方自治團體에 任用權者 (任用權을 委任받은 者를 除外하되, 그중 市의 區廳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所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별로 人事委員會를 둔다.
  - ② 人事委員會는 委員 5人以上 7人以下로 構成하되, 第3項 각호의 規定에 의하여 委囑되는 委員은 2人으로 한다.
  - ③ 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者로서 人事行政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다만, 試險委員은 試驗實施機關의 長이 따로 委囑할 수 있다.
  -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2. 大學에서 法律學・行政學 또는 敎育學을 擔當하는 副敎授以上의 職에 있거나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校長의 職에 있는 者
  - 3. 公務員(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서 20年以上 勤續하고 退職한 者

#### 나. 他直轄市 比較

- 議會事務處長에게 任用權等 委任 與否

다 의 시 브	-	위 임	여	부
7 T 7 T	부산	대구	인찬	광주
우리시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와 동일함.	0	0	×	0

※ 부 산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미위임

####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구청장·사업소장"을 "의회사무처장·구청장·사업소장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표2, 별표3"으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3"중 총무과란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

###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관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법령	수임기관
李平江	1	○ 5급이하 일반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 회 사무처장
	2	O 6급상당 이하 별정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장계·면적등의 임용권 전반	"	"
	3	○ 기능적 공무원(6등급이하)의 신규·전보· 승진임용(장당계급 승진), 징계·면적등의 임용권 전반	"	"
	4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i>II</i>	II
	5	O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동법 제7조	"

### 사업소장등에게 권한위임하는사항

### [ 별표 3 ]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6]	사	무	명	근거 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5	ㅇ 인사위원회	설치	· 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조	상 수 도 사업본부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भु	* 7H	Z <sub>c</sub>	}	~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적 "직할시장"이라 한다) 중 그 일부를 구칭장	지방자치법 제95조 선직할시장(이하 이 관장하는 사무 및 사업소장에게 이하생략 장의 사무증 <u>구청</u>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는 사무는 별표2와	구칭장	에게 위임하는	- 사무는 별표	2, 사업	
같다.		소장등	에게 위임하는	-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u>선</u> 설)	[별표1] 오관부서 일련 소관부서 번호 총 무 과 1 0	위 임 사 5급이하 일 의 의회사 6급상당 별 의 신규임 면직등의 역	반직 공무원: 루처내 전보권 정직 공무원: 농·장계· 임용권 전반	근 거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이하), 정기 임용권 전투	·진임용(6등급 제 · 면직등의·	"		
		계약 및 채	용기간 연장	동법 제7조		
( <u>선 절</u> )	[별표3] 소관부서 <mark>일련</mark> 선호	위 임 시	·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5 0	인사위원회	I 설치·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조	상수도사 업본부장	

###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査 報 告

1994年 6月 29日 內務委員會

### I. 審 査 經 過

1. 提出日字 및 提案者: 1994年 5月 28日 大田直轄市長

2. 回 附 日 字:1994年6月8日

3. 上程日字:第33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1994. 6. 29)

上程, 審議, 原案可決

### Ⅱ.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企劃擔當官)

#### 1. 提 案 理 由

'93. 12. 27 法律 第4613號로 地方公務員法(第6條 第2項)이 改正되 면서 地方自治團體長의 地方公務員 任用權限의 委任範圍가

"補助機關의 長"에서 地方議會의 事務處長等에게도 委任할 수 있도록 改正됨에 따라,議會事務處長에게 所屬公務員 任用權의 一部를 權限委任하고,

○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旣 委任된 任用權과 關聯한 一部權限을 追 加委任하여 效率的인 人事管理를 기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議會事務處長에게 權限委任하는 事項
  - ・ 5級以下 一般職 公務員의 議會事務處內 轉補權
  - ・ 6級相當以下 別定職 公務員의 新規任用・轉補・懲戒・免職等의 任用權 全般
  - ・ 技能職 公務員(6等級 以下)의 新規・轉補・昇進任用, 懲戒, 免職 等의 任用權 全般
  - · 專門職 公務員의 採用契約 및 採用期間 延長
  - ・ 人事委員會의 設置・運營
-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權限 委任하는 事項
  - · 人事委員會의 設置・運營

### Ⅲ. 專門委員 檢討要旨(專門委員:韓連東)

本 案件은 地方公務員法 第6條 第2項 및 第7條의 規定에 의거 地方公務 員의 任用權限을 議會事務處長에게 委任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旣 委任된 任用權限外에 一部權限을 追加로 委任 하려는 內容임.

먼저 議會事務處長에게 權限委任하는 事項임.

- ・ 5級以下 一般職 公務員의 議會事務處內 轉補權과
- ・ 6級相當以下 別定職 및 기능직 公務員의 新規任用, 轉補, 懲戒, 免 職등의 任用權
- 그리고 專門職 公務員 採用에 관한 事項과

- ・ 人事委員會 設置・運營에 관한 事項임.
- ・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權限委任하는 事項은 人事委員會 設置・運營에 관한 事項을 追加 委任하는 것임.

本 改正案은 관련 公務員法에 根據를 둔 것으로써 議會內 5級以下 公務員 轉補權과 6級以下 別定職 및 技能職 任用權, 그리고 專門職 採用權의 委任은 議會가 要求하는 선에서 最大限 收容된 것으로 思 料됨.

- Ⅳ. 討論要旨:省略
- V. 質疑 및 答辯要旨:省略
- VI. 審 查 結 果: 原案可決